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보 수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도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 성과연봉 등 보수제도 운영 및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시·도 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를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당해 기관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을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로 한다.

제35조제3항 전단 중 “장이 책정”을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을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야 한다.”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205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3 제5호나목 비고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비고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특별승급) ①·② (생략)	제15조(특별승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u>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도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 규정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수지급일) ①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당해 기관의 ----- ----- -----.

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시·도 또는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⑤ -----

-----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50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3호-----

제50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